

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2. 6. 15.>

물류창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4일
신청인	상호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)	전화번호	
	소재지		
물류창고 종류/규모	<input type="radio"/> 보관시설(일반창고):	동	m ²
	<input type="radio"/> 보관시설(냉동·냉장창고):	동	m ²
	<input type="radio"/> 보관장소:		m ²

※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
제21조의2제1항 및 「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

제21조의2제2항 및 「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

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·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<p><신규등록의 경우></p> <p>1. 「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</p> <p>2.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(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) 1부</p> <p>3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</p> <p>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</p> <p>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</p> <p><변경등록의 경우></p> <p>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p>	수수료 10,000원
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, 건물등기부 등본,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, 지방해양수산청(물류창고업 담당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